

## 영국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1)

### I. 들어가는 글

영국은 서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립한 국가이다. 전시였던 1942년, 경제학자인 William Henry Beveridge가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를 모토로 “Beveridge Report”를 제창하였고, 전후 이를 토대로 한 후속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영국의 복지제도의 근간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복지제도는 국내의 경제상황 및 노동당 - 보수당 - 노동당 - 보수/자유당으로 이어지는 정권교체에 따라 끊임없이 재개정을 반복해 왔다.

지난 2010년 5월, 보수/자유 연립정부는 13년 만에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남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정부의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연립정부는 정부재정의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해 부가세(VAT) 등을 높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정부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 지출이 정부 총지출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2011년 2월 17일에 발표된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1)”은 이처럼 정부지출의 효율성 강화라는 정부 구조조정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보수/자유 연립정부는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다양한 사전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0년 6월, 영국 정부는 “장애 생활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개혁할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인 “장애 생활 수당 연금개혁 자문문서(Consultation paper Disability Living Allowance Reform: Cm 7984)”가 발표되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2010년 7월, 복지 개혁의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외부 기관 및 노동·연금 부서 담당자를 포함하는 1,600명 이상을 참가시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여, “21세기 국가 복지(21st Century Welfare: Cm 7913)”를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Universal Credit”이라는 백서가 발간되었는데

데, 고용 장려, 고용환경 개선, 연금제도의 일원화 및 복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듬해인 2011년 1월에는 “가족관계 강화, 부모 책임감 장려: 아동 부양의 미래에 관한 자문문서(Consultation Document Strengthening Families, Promoting Parental Responsibility: the Future of Child Maintenance: Cm 7990)”가 발간되었는데,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들이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 즉, 법정 세율 유지 스키마(Statutory Maintenance Scheme) - 자신의 힘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1)의 핵심은 고소득층에 대한 무상혜택을 축소시키고, 구직 포기자(Work-shy scroungers)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업/주택/장애 등으로 나뉘어 지급되던 복지혜택을 가구단위로 통합하여 그 혜택의 수급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 II. 법안의 구조

영국의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1)은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37개의 조항과 13개의 부속서(Schedules)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Part 1 통합수당(Universal Credit)<sup>1)</sup>: 그동안 부분별로 나뉘어 있던 연금 및 수당을 통합하여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통합수당의 내용 및 청구자의 자격 요건, 의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Part 2 고용수당(Working-age Benefit): 기존의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 고용보조 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과 소득 보조금(Income Support: IS) 청구자의 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직자가 수당 청구시 지켜야 할 의무(Claimant Commitment)”가 도입되었다.

Part 3 수당변경(Other Benefit Changes): 기타 사회 보장 연금 - 산업 재해 수당(Industrial Injuries Benefit), 주택 급여(Housing Benefit), 사회 기금(Social Fund), 국가 연금 보조금(State Pension Credit) - 에 관한 수정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Part 4 개인독립지출(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장애 생활 수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당에 대한 프레임 워크가 제시된다.

Part 5 사회보장일반(Social Security: General): 사회보장 연금의 행정과 관련된 지불액 측정 및 세금 급여 사기에 대한 규정이다.

Part 6 기타: 양육에 관한 부모들의 책임 규정과 생활비에 관한 규정이다.

Part 7 Final: 재정에 관한 규정 및 법안의 범위, 규정 효력 발생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 현재 국내 언론에는 Universal Credit을 “보편적 수당” 혹은 “일반적 수당”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개념이 기존의 부분별로 나뉘어졌던 연금 및 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한다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을 때, “통합 수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Ⅲ. 주요 내용

다음은 본 법안에 의해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통합수당(Universal Credit)

본 법안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통합수당(Universal Credit)”은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와 노동활동 종사자 및 비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장치로서,<sup>2)</sup> 소득의 증감에 따라 수급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동등하게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청구자의 재정상황 및 생활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기존의 7가지로 나뉘었던 복지관련 지원<sup>3)</sup>이 이번에 신설되는 “통합수당”으로 대체된다. 통합수당을 받기 위해서 개인 혹은 커플이 함께 지원할 수 있으나 청구자 모두 법률이 규정한 요건 및 재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Section 1). 기본 자격요건으로는 ① 적어도 18세 이상 및, ② 국민연금(state pension credit) 수령 연령(65세) 미만이어야 하며, ③ 영국 내에 거주하는 자이고, ④ 교육을 받지 않아야 하며, ⑤ 청구자의 의무요건(claimant commitment)을 받아들여

야 한다는 것이다(Section 4 (1)(a)~(e)). 재정요건으로 자산과 소득의 합계가 규정된 총액을 넘어서는 안되며, 공동 청구자일 경우에도 청구자들의 자산과 소득의 총 합계가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때만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Section 5 (1)~(2)). 비록 청구자가 위의 기본·재정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경우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과 같은 기타 재정수당을 수령하고 있을 때에는 이와 중복해서 통합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기본·재정 자격요건이 법률이 지정한 것보다 짧은 기간 동안 갖추어졌을 때에는 통합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Section 6(1)~(3)). 이러한 제한규정은 국무장관(State of Secretary)이 지정할 수 있다.

#### 2. 작업과 관련된 요건(Work-related requirement)

본 법안에서 일 관련 요건이란 청구자에게 지급될 수당은 각 개인이 처한 신체적·재정적 환경에 따라 다르며, 청구자 역시 법률이 명시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청구자는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국무장관이 지정한 “일자리에 관련된 인터뷰



2) Welfare Reform Bill 2011 Explanatory Notes(2011년 2월 16일), p.6.

3) “근로세액 공제(Working Tax Credit),” “아동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주택 지원(Housing Benefit), (카운슬 세금 혜택(Council Tax Benefit),” “소득 보조금(Income Support),” “소득기반 구직자 수당(Incomebased JSA: Jobseeker's Allowance)” 및 “소득관련 고용 보조수당(Income-related ESA: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work-focused interview requirement)”에 1회 이상 참가를 해야 하며, 인터뷰의 시간, 방식 및 장소는 국무장관이 정한다(Section 15).

(2) “구직 준비(work preparation requirement)”란 실업자의 구직활동 및 기존 구직자가 보다 높은 봉급을 받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다만 신체적·정신적으로 Section 16(3)에서 규정한 구직준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국무장관이 승인한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구직 관련 건강검진(work-focused health-related assessment)”을 받아야 한다(Section 16(4)~(5)).

(3) 청구자는 또한 “구직(work search requirement)” 요건을 충족시켜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sup>5)</sup>

(4) 마지막으로 “청구자는 노동참여(work availability requirement)”가 현재 가능한지 혹은 할 것인지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Section 18).<sup>6)</sup>

기타 규정으로 국무 장관은 다음과 같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작업과 관련 요건의 부담을 지울 수 없다. (a) 신체 및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작업 또는 작업과 관련된 활동에 제한된 노동력<sup>7)</sup>을 가진 자, (b) 심각한 상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규칙적으로 신뢰할 만한 간호 책임을 가진 자, (c) 1세 이하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자 및 (d) 처방을 받은 자이다(Section 19 (1), (2)(a)~(d)).

### 3.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본 법은 구직자 수당 지급 요건인 구직자 청구의무(claimant commitment)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어, 기존의 구직자 법(Jobseekers Act; JA, 1995)의 제1조 및 제9조의 규정이 수정 및 개정되었다. 구직자는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 법이 규정한 의무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하며(Section 44 (1)~(2); JA 1995 Section 1), 청구 의무의 결정은 고용 집행자, 국무 장관 및 관련 업무 공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서류(form) 및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Section 44 (3); JA 1995 Section 9). 그 밖의 청구 의무의 다양한 조건 및 정보 관련 규정은 본 법 Section 44 (4)~(5)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직자 수당 심사를 위한 국무장관의 인터뷰 규정이 개정되어 청구인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필수적으로 임



4) Section 16(3)은 구직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attending a skills assessment; (b) improving personal presentation; (c) participating in training; (d) participating in an employment programme; (e) undertaking work experience or a work placement; (f) developing a business plan; (g) any action prescribed for the purpose in subsection (1).

5) Section 17(3)은 구직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carrying out work searches; (b) making applications; (c) creating and maintaining an online profile; (d) registering with an employment agency; (e) seeking references; (f) any action prescribed for the purpose in subsection (1).

6) 본 조항의 노동참여 요건은 실업자의 노동참여와 기존 구직자의 더 높은 봉급을 주는 일자리(better-paid work)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ection 18(2)).

7) 작업 또는 작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제한된 노동력을 가진 자의 자세한 요건 및 규칙은 section 38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야 한다(Section 45; JA 1995 Section 8).

다음으로 구직자 수당 제재 규정이 기존 법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본 법에는 새로운 수당 지급 제재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구직자는 이 제재 시스템의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구직자는 수당 수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에 높은 수준의 제재(High-level sanctions)를 받게 된다. 즉 (a) 임금 관련 부정행위, (b) 자발적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한다거나, (c) 고용되었거나 공석이 있는 경우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입사를 거절하거나 포기한 경우, (d)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태만을 저질러 기회를 놓친 경우이다(Section 46; JA 1995 Section 19). 이 외에 수당에 따른 기타 자격 조건도 규정되어 있다.<sup>8)</sup>

#### 4. 고용 보조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고용 보조수당은 2007년 복지 개혁법이 개정될 때 처음 도입되었으나, 본 법안에서 고용 보조수당 청구자에 대한 책임 조항이 추가로 삽입되었다. 고용 보조수당 자격요건은 국무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 것으로(Section 53(3); WRA 2007 Section 1B) 저소득층(Hardship pay-

ment)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Section 55; WRA 2007 Section 16A). 새로 추가/개정된 고용 보조수당 청구자 책임 관련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sup>9)</sup> 이 조항에는 앞에서 규정된 작업과 관련한 통합 수당의 규정과 부합된다. 단, 앞으로 적용될 고용 보조수당 청구자는 통합수당의 고용과 관련한 상위 자격 요건(High-level sanctions)은 적용받지 않는다.<sup>10)</sup> 또한 기타 수당으로 배우자가 없는 부모들을 위한 소득 보조금(Income support)의 자격 요건 및 청구자의 책임 규정이 개정되었고(Section 57~58; WRA 2009 Section 3, 8; SSCBA 1992 Section 124; SSAA 1992 Section 2F, 2G), 이 외에 약물 중독 청구자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Section 59).

#### 5. 사회보장 연금: 주택 급여(Housing Benefit), 사회 기금(Social Fund)

사회보장 연금은 경기의 안정화와 고용 장려의 목적으로 기존보다 더 공정한 접근 방식을 위해 수정·보완되었다. 먼저 주택 급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 급여 청구자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최대 주택 급여(AMHB: appropriate maximum housing benefit) 규칙이 제정되었다(Section 68



8) Section 46(7)에 기타 구직자 자격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는 JA 1995의 19A로 신설 조항이다.

9) Section 56는 WRA 2007의 Section 11~16까지 개정 조항이다.

10) Welfare Reform Bill 2011 Explanatory Notes(2011년 2월 16일), p.40.

조(1)~(2)). 사회보장 기부연금법(SSCBA: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130A)에 의하면 국무장관은 주택 대출 담당자의 결정에 상관없이 AMHB의 결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주택 급여 청구자의 대출 비용 채무에 관한 주택 급여 규정(housing benefit Regulations) 역시 AMHB 범위에 속하게 된다(Section 68(3); SSCBA 130A(5)~(6)). 기존에는 지역 주택 수당(LHA: local housing allowance)을 기초로 한 렌트 채무 비용 결정 권한이 주택 대출 담당자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국무장관이 LHA 비율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다.<sup>11)</sup> 특히 구직 연령 관련 청구자(Working-age claimants)의 경우에는 주택 크기 기준(size criteria)을 도입하여, 청구자의 실제 렌트 채무 비용액수를 고려해 주택 크기(방 숫자 기준)가 결정될 것이다.<sup>12)</sup>

다음으로 사회 기금(Social Fund)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지역 정부의 권한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 기금 시스템(Social Fund System)에 전면적으로 개혁을 가했다. 기존의 사회 기금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출되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 개혁된 규정은 국무장관이 그 지급 책임을 가지게 되어, 긴급 대출, 커뮤니티 케어 보조금 및 예산 대출과 같은 **舊**규정을 무효화시켰다(Section 69; SSCBA 1992 section 138(1)(b)). 즉,

본 법안이 발효되면 지난 2009년 제정된 WRA의 Section 16~21은 폐지될 것이다. 따라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는 새롭게 지방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이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기타 사회기금인 국가연금 보조금(State pension credit)의 규정도 변경되었는데, 커뮤니티도우미(Carer)가 “규칙적(regular)”이며 “신뢰할 만한 간호능력(substantial caring responsibility)”을 가진 자로만 고려될 것이고, 그 규정은 국무장관이 정한다(Section 73; SPCA 2002 section 17). 아울러 국가연금 보조금액 제한 관련 규정으로, housing benefit이 폐지되면, 주택급여를 받았던 청구자들은 본 법안 Section 35에 규정된 housing credit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sup>13)</sup>

**6. 장애를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 개인독립지출(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개인독립지출은 기존의 “장애 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새로운 장애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를 구체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고 궁극적으로 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11) Welfare Reform Bill 2011 Explanatory Notes(2011년 2월 16일), p.46.  
 12) Welfare Reform Bill 2011 Explanatory Notes(2011년 2월 16일), p.46.  
 13) Welfare Reform Bill 2011 Explanatory Notes(2011년 2월 16일), p.48.

다.<sup>14)</sup> 개인독립지출은 크게 일상생활(the daily living)이나 이동 활동(the mobility)에 제약을 받는 자, 혹은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된다. 일상생활 요건에 해당되는 장애인(Daily living component<sup>15)</sup>)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는데, 일반기준(the standard rate)과 강화기준(the enhanced rate)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있는 자들이며, 후자는 위와 같은 장애로 일상생활이 매우(severely) 곤란한 자들을 말한다(Section 76).

다음은 이동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Mobility component)<sup>16)</sup> 역시 일반 기준과 강화 기준으로 나뉘어 그 수당 금액이 결정되어진다(Section 77). 두 형태의 장애를 가진 청구자들이 수령할 일반 기준 및 강화 기준에 따라 규정된 금액은 주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규정된 기간 조건(required period condition)을 충족하여야 한다(Section 77(1)~(3)).

본 조에 해당되는 청구자들은 6개월마다 그들의 장애의 정도 및 일상 활동 능력을 심사할 것이다(Section 79). 다만, 말기 환자<sup>17)</sup> 및 말기병을

기초로 청구한 환자들은 자동적으로 일상생활 제약 강화 기준으로 분류되어, 개인 독립 지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심사 및 제한된 기간 조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Section 80). 기타 규정으로 구류 및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 독립 지출의 수령을 금한다(Section 84).

## 7. 급여 사기

현재 매년 과다 측정되거나 착오로 인해 약 31억 파운드의 수당과 약 21억 파운드의 세금공제가 잘못 지급되고 있다. 이 대부분은 담당자 및 수급자의 실수(error)였으며, 나머지 15억 파운드는 사기(fraud)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13억 파운드는 실제 지급되어야 할 액수보다 적게 지급되었다.<sup>18)</sup> 따라서 연립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특히 사기에 의해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다. 1992년 및 2001년에 제정된 사회보장 시행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2001) 및 사회보장 사기법(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 등에서 규정한



14) Welfare Reform 2011 assessment of impacts: For introduction to the House of Commons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16th February 2011): <http://www.dwp.gov.uk/docs/wr2011-ia-cover-note.pdf> (2011년 3월 14일 접속).

15) “일상생활 활동(daily living activities)”의 자세한 의미는 법안 설명서(Welfare Reform Bill 2011 Explanatory Notes) p.50에 정의되어 있다.

16) “이동 활동(mobility activities)”의 자세한 의미는 법안 설명서(Welfare Reform Bill 2011 Explanatory Notes) p.50을 참고할 수 있다.

17) 말기 환자란 앞으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자를 뜻한다(Subsection 80(4)).

18) Welfare Reform Bill: Parliamentary Briefing: Second Reading (House of Common: 9 March 2011): [http://fullfact.org/files/2011/03/Welfare\\_Reform\\_Bill\\_2R\\_Briefing.pdf](http://fullfact.org/files/2011/03/Welfare_Reform_Bill_2R_Briefing.pdf) (2011년 3월 12일 접속).

다양한 처벌 규정을 법안 곳곳에 삽입했다. 이를테면 1992년의 사회보장 시행법 Section 116에서 명시된 주택 및 카운슬 세금 급여 범죄에 관하여 지방정부의 기소 권한을 본 법안의 Section 107(2)에 삽입하였고,<sup>19)</sup> 이에 대한 예외 조항 및 국무장관의 권한을 추가하였다(Section 107(2)~(7)). 또한 사회보장 시행법 Section 115A의 벌금 규정을 삽입해,<sup>20)</sup> 사기를 통해 초과 액수를 수급 받은 자는 수령액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며, 벌금은 최소 350파운드, 최대 2,000파운드이다(Section 109 (3)(a)~(b)). 한편, 자격이 없는 급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제재가 따른다. 예를 들어 아동 세액 및 노동 세액에 관련하여 사기를 저지른 자들은 앞으로 급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다(Section 112; SSFA 2001 section 6A).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급여 범죄 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간이 적용되며, 적게는 4주에서 많게는 3년까지 제한될 것이다(Section 113; SSFA 2001 6B). 또한, 급여 사기의 재범의 경우에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적용되며, 급여 제재 기한은 범죄 행위의 건수에 비례해 더 연장된다(Section 114).

한편 급여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세액 사기

(tax credit)의 손실에 관한 규정이 새로 삽입되었다(Section 115; Tax Credits Act 2002 section 36). 이 조항에는 세액 사기 범죄(재범)에 따른 기소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8. 어린이 부양비(Child Support Maintenance)

자녀들의 양육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다. 영국 정부는 부모들에게 자녀 부양의 책임을 확실하게 지도록 함으로써, 영국 정부의 법정 세액 지출을 축소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동 양육법(Child Support Act, 1991)의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 합의(maintenance agreement)에 법정 세액 지출 감소를 위한 조항들을 삽입시켰다(Section 128). 어린이 부양비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은 아동 부양 및 시행 위원회(Child Maintenance and Enforcement Commission)에서 맡는다(Section 128). 한편 부양해줄 부모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 법이 정한 부양비액이 적용될 것이며, 청구인은 부양금액의 청구 및 수령을 위해 본 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된다(Section 129; Child Support Act 1991 Section 4). 또한 정부는 법정 세율 아동 스키마



19)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Section 116ZA “지방정부는 주택 급여와 카운슬 세금 급여를 사기로 수령할 경우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Local authority powers to prosecute housing benefit and council tax benefit fraud).”

20) 한편 본 법안의 Section 111에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의 Section 115C (부주의로 급여 신청을 잘못했을 경우) 및 115D(사기 사실을 폭로했을 경우)의 규정을 삽입했다.

(Statutory child scheme)에 따라 부모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양육비를 측정(Indicative maintenance calculation)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본 양육비의 지급에 앞서 청구인의 자격 조건 및 부양비 액수 결정에 따른 심사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Section 130; Child Support Act 1991 Section 9A).

#### IV. 닫는 글

보수/자유 연립정부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복지개혁법안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효율적인 복지재정 지출을 통해 공정한 복지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노동당 정권하에서 영국의 복지재정의 규모와 수급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한 것도 사실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오 혹은 사기로 인해 잘못 지급된 액수가 많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구직 포기자들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방만했던 복지 재정을 구조 조정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인들의 잘못된 복지 관행을 개혁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연금부 장관 이안 던컨(Ian Duncan)은 “이 개혁 법안은 그릇된 제도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자주 그릇된 목적으로 [정부로부터의] 보상을 받아 왔던 것을 종식시키는” 한편,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up>21)</sup> 따라서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연설을 통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급’ 액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수급’ 문화를 바꾸려는 것(This Bill is not an exercise in accounting. It’s about changing our culture)”이라고 밝혔으며, 궁극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보다 부유해질 것(The more you work, the better off you will be)”<sup>22)</sup>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동안 복지수당을 통해 무위도식하던 일부 영국인들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본 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 역시 강력하다. 이 법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기존의 장애 생활수당(DLA: 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받았던 사람들의 약 20%가 새로 도입되는 개인독립지출(Personal independence payment)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하원의 사회복지 자문 위원회(the Social Security Advisory Committee)는 이 법안의 심사 중 이 법안이 장애 생활수당



21) BBC News, “David Cameron sets out Welfare Reform Bill plans” (17 February 2011): <http://www.bbc.co.uk/news/uk-politics-12486158> (2011년 3월 10일 접속).

22) David Cameron, “PM’s speech on Welfare Reform Bill” (Prime Minister’s Office: 17 February 2011): <http://www.number10.gov.uk/news/speeches-and-transcripts/2011/02/pms-speech-on-welfare-reform-bill-60717> (2011년 3월 15일 접속).

을 폐지할 정확한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반대자들은 기존의 장애 판정에 있어 GPs(1차 진료 기관의 의사) 및 관련 전문가가 담당했을 때에도 큰 문제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DLA가 미처 정착되기도 전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sup>23)</sup> 그러나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자신은 본 법안이 “단순히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복지제도의 새로운 토대로서 정착시킬 것”<sup>24)</sup>을 천명하고 있어

서 법안 통과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2011년 3월) 이 법안은 하원의 2차 심사(Second Reading)를 거쳐 위원회 검토단계(Committee stage)에 있다.<sup>25)</sup>

### 조 의 행

(해외입법조사원, 영국 켄트대학교 대학원)



23) Guardian, “Welfare reform bill will punish disabled people and the poor” (11 March 2011): <http://www.guardian.co.uk/society/2011/mar/08/welfare-reform-bill-punish-disabled-poor>(2011년 3월 7일 접속).

24) BBC News, “David Cameron sets out Welfare Reform Bill plans” (17 February 2011): <http://www.bbc.co.uk/news/uk-politics-12486158>(2011년 3월 10일 접속).

25) 본 법안의 의회에서의 심사과정은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0-11/welfarereform.html>(2011년 3월 14일 접속).